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수 성과자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를 위한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 확대, 승진시험업무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22조, 별표)

나. 승진시험업무 실시권 위임범위 변경(안 제2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승진대상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별표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①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별표]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제22조 관련)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승진심사 대상
1~10명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명당 5배수
11명 이상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50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u>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은 별표에 따른다.</u>	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u>승진대상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별표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심사 대상으로 한다.</u>
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u>별제11조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은 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u> 1. <u>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로의 시험: 중앙소방학교장</u> 2. <u>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중앙소방학교장</u> 3. <u>시 · 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시 · 도지사</u> ② <u>시 ·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 도지사와</u>	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u>별제11조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은 시 · 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u> ② ----- <u>제1항</u> ----- ----- ----- <u>소방청장</u> ----- -----. ----- -----

<u>중앙소방학교장</u>이 협의하여 정 한다.	<u>소방청장</u>----- ---
---------------------------------------	---------------------------------

[현행]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별표] <개정 2018. 12. 24.>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제22조 관련)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승진심사 대상
1명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이하 "통합명부"라 한다)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5순위인 사람까지
2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8순위인 사람까지
3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12순위인 사람까지
4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16순위인 사람까지
5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18순위인 사람까지
6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20순위인 사람까지
7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22순위인 사람까지
8명 이상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3배수에 해당되는 순위인 사람까지

[개정안]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별표] <개정 2018. 12. 24.>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제22조 관련)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승진심사 대상
1~10명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명당 5배수
11명 이상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50명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교육훈련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7044 (044) 205 - 7292